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#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5년 10월 1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사명 : 오라이언자산운용(주)  
(영문명) Orion Capital Management CO., Ltd.  
(홈페이지) <http://www.orioncm.co.kr>

본점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0 미원빌딩 19F (여의도동 43)  
(전화) 02-782-9116

대표이사 : 김병기

담당임원 : (직책) 준법감시인  
(성명) 염상열 (전화) 02-2135-2750

작성자 : (직책) 준법감시인  
(성명) 염상열 (전화) 02-2135-2750

제출이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6-6-2호)

## 소송 등의 판결·결정

1. 사건의 명칭	용역비 청구 및 근질권설정계약 취소
2. 원고 · 신청인	주식회사 맥OO
3. 판결 · 결정내용	온라인언자산운용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
4. 판결 · 결정사유	근질권설정계약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, 이는 맥OO 채권에 대한 불법행위(제3자 채권침해)에 해당하지 않음
5. 판할법원	인천지방법원
6. 판결 · 결정일자	2025.09.26
7. 확인일자	2025.10.01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본건 소송으로 당사 또는 해당 펀드에 금전적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음

### 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(가처분 포함) 등의 판결·결정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.
- 주2) “판결 · 결정사유”는 소송의 포기 · 취하 · 인낙 · 화해, 판결, 결정, 명령, 신청 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.
- 주3)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 · 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